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Working Mothers' Perception and Demand on Child Care Policy and Institution

Supporting the Working Mothers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이영미

Division of Social Welfare, Cheonan University

Lecturer : Lee, Young-Mi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perception and demand for the child care policy and child care service of worki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6. The subjects were 266 working mothers in Seoul and Kyoung-Gi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with the questionnaire method and analyzed by spss-win program, including median, mod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working mothers considered both parents have the responsibility on child care and strongly demanded the national support on child care. (2) The working mothers prefered own mother and relatives to child care center as a carer of infants and toddlers, but prefered child care center for children age 3-5. (3) The working mothers demanded the increase of financial support for family and child care center. (4) The working mothers focused on 'the security and care program' and focused next on 'diet and health care program' in child care service. (5) The working mothers did not nearly know about the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centers.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national and social support for child care service is an essential part in promoting children's and the working mothers' welfare.

▲주요어(Key Words) : 취업모(working mother), 자녀양육지원제도(child care policy and institution),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center)

I. 문제의 제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40.0%, 1990년에는 49.2%, 2000년에는 51.2%(한국여성개발원, 20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 1985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25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대별 취업여성 비율을 비교할 경우 30-34세의 취업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3년의 경우 25세에서 44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60% 전후인 반면 30-34세 때는 49.8%로 나타나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절정 시기인 30-34세에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여성의 취업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육아부담(41.1%)'을 가장 큰 취업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며 '육아부담'은 대졸이상 여성과 출산과 육아부담을 갖는 30대 여성에게 높게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미취업 기혼여성(n=466) 중 96%가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60%는 가사 및 보육·육아 때문에 시간제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경기개발연구원, 2003),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취업모들의 경우도 상당수(76.0%)의 취업모들은 자녀문제로 퇴직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민혜윤, 2003), 취업모가 경험하는 직장생활의 장애요인으로 자녀양육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이상화, 2002)되었다. 실제 출산휴가를 받은 취업모 10명중 1명이 퇴직하고 퇴직자의 68%는 육아문제로 퇴직한다는 조사

* 주 저 자 : 이영미 (E-mail : selfdis@hanmail.net)

결과도 있다(노동부, 2005). 이러한 보고들은 기혼여성이 취업과 자녀양육을 양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그런데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을 결정하는 주요인 중 하나는 자녀보육자의 유무(김지경, 2004)이며 사무직 기혼여성의 경우도 자녀 보육자가 있을 때 출산 후 취업을 지속(서지원, 이기영, 1997)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김기현, 2000)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 집단이 아버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인 중 보육만족도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2000). 또한 대리양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윤미, 2002) 양질의 가정의 보육이 취업모의 취업지속 및 자녀양육 부담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모의 직장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에 관한 갈등과 곤란은 개별 가정의 차원에서 보면 자녀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결국 기혼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위축 및 노동포기, 아니면 자녀출산 기피나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가 점차 변화하여 '가정과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은 1988년의 16.7%에서 2002년의 40.2%로 높아진 점(한국여성개발원, 2004)을 고려할 때 가정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할 경우, 결국 직장과 가정의 통합보다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극화된 생활양식(Hunt & Hunt, 1982)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과 가족의 갈등 문제는 더 이상 취업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아버지보다 취업모에게 더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양육자의 돌봄을 더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할 때 실질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보육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문제의 해결 역시 공적 지원과 관심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개별 가족 및 개별 취업모는 현재 사회와 국가의 자녀양육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요구를 갖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정책을 통해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육서비스를 통해 취업모의 육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양적으로 급증한 보육시설은 취업모와 빈곤,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왔다. 2005년 들어서는 만 5세아 무상보육이나 빈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개정영유아보육법의 발효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확충에 비해 정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일선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 관

리를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더욱이 빈곤, 저소득 가정이나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원에서 나아가 원하는 모든 가정의 아동들이 미래세대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돋는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 프로그램의 기본 조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있어서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인 취업모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모가 기대하는 질적 보육이 되기 위해 보육에서 무엇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취업모가 실제 보육서비스에서 더 긴급하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보육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가 실시된다. 평가인증이란 '일정한 수준의 총족에 대한 공적 인정'으로 정의(이옥, 2002)되는데, 보육 시설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기초로 시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들에게는 국가가 보증하는 보육시설에서 성장발달권 및 교육과 보호권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단,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종사자, 아동,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등 보육관련 이해 당사자 각각의 관점에서 보육의 질이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으므로(Katz, 199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시행과 변화를 염두에 둘 때 보육수요자의 한 당사자인 취업모의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의 확대는 질적 보육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의 일환이고 취업모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질적 보육서비스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기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취학전 유아가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관련해 취업모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취업모의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있는 보육시설의 서비스에서 취업모가 더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기대를 조사하여 질적 보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과 실제 측면에 대한 취업모의 기대와 요구를 검토함으로써 취업모를 둔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는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적어도 한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취업모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

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취업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가 전체 중 약 80%로 가장 많았고 연령 평균은 약 36세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이상이 약 93%를 차지했고 직업형태는 전일제인 경우가 약 73%였다. 직업은 전문직이 약 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무직으로 약 28%를 차지했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약 79%를 차지했고 조부모를 포함하는 3세대 가족은 약 15%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본 결과 가계월평균 총소득은 평균 약 570만원이었고 중위수는 470만원이었다. 가계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응답자중 약 24%였고 5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20%였다. 취업모 본인의 월소득 평균은 약 242만원이었고 중위수는 200만원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응답자 중 약 37%였으며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약 34%를 차지했다. 첫 자녀의 나이는 평균 약 5.19세로 최저 1세에서 13세였으며, 첫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기간은 최저 0개월에서 84개월이고 이용기간의 평균은 22.89개월이었다. 둘째 자녀의 나이는 평균 3.79세로 최저 3개월에서 12세까지였으며 둘째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기간은 최저 0개월에서 72개월이었고 이용기간의 평균은 15.34개

월이었다. 셋째 자녀를 둔 경우는 전체 266사례 중 8사례(3%) 였다.

2. 조사절차

자료조사는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는 조사원을 통해 수집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개별적으로 조사한 경우 서울시내 자영업 상가, 병원, 약국, 학교에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총 100부)하고 즉시 회수하거나 다음날에 회수하였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8개소를 방문하여 기관별로 최소 10부에서 80부를 배부(총 280부)하고 1주일 후에 1차로, 2주일 후에 2차로 회수하였다. 배부된 380부의 질문지 중 회수된 질문지는 총 270부였고 그 중 266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사항을 묻는 문항과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 보육서비스 평가의 초점과 묻는 문항,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변인 | 구분 | 빈도(%) | 변인 | 구분 | 빈도(%) |
|-----------|-----------|------------|-----------|-----------|------------------------|
| 연령 | 30미만 | 34(12.8) | 교육수준 | 고등학교 졸업 | 19(7.1) |
| | 30대 | 212(79.7) | | 대학 졸업 | 181(68.0) |
| | 40이상 | 20(7.5) | | 대학원 졸업 | 66(24.8) |
| | 계 | 266(100.0) | | 계 | 266(100.0) |
| 가족 형태 | 부부+자녀 | 208(78.5) | 직업 | 전문직 | 96(36.4) |
| | 조부모+부부+자녀 | 39(14.7) | | 관리직 | 5(1.9) |
| | 부부+자녀+친척 | 8(3.0) | | 사무직 | 75(28.4) |
| | 기타 | 10(3.8) | | 자영업 | 35(13.3) |
| | 계 | 265(100.0) | | 기술직 | 5(1.9) |
| 직업 형태 | 전일제 | 192(73.0) | | 판매서비스직 | 25(9.5) |
| | 시간제 | 71(27.0) | | 무직 | 1(4) |
| | 계 | 263(100.0) | | 기타 | 22(8.3) |
| | | | | 계 | 264(100.0) |
| 본인 월소득 | 100미만 | 22(8.7) | 가계월평균 총소득 | 200미만 | 5(2.0) |
| | 100~200미만 | 86(34.0) | | 200~300미만 | 14(5.6) |
| | 200~300미만 | 94(37.1) | | 300~400미만 | 49(19.5) |
| | 300~400미만 | 28(11.1) | | 400~500미만 | 61(24.3) |
| | 400~500미만 | 11(4.4) | | 500~600미만 | 50(19.9) |
| | 500이상 | 12(4.8) | | 600~700미만 | 27(10.8) |
| | 계 | 253(100.0) | | 700이상 | 45(17.9) |
| | | | | 계 | 251(100.0) |
| 첫째 자녀의 나이 | 2세 이하 | 37(14.2) | 둘째 자녀의 나이 | 2세 이하 | 43(32.3) |
| | 3~5세 | 135(51.9) | | 3~5세 | 65(48.9) |
| | 6~9세 | 66(25.5) | | 6~9세 | 21(15.8) ¹⁾ |
| | 10~13세 | 22(8.4) | | 10~12세 | 4(3.0) |
| | 계 | 260(100.0) | | 계 | 133(100.0) |

향, 그리고 자녀양육 책임의식 및 적합한 자녀양육 담당자를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의 질문 문항은 경기개발 연구원(2003), 김향란(2003),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4), 이경채(2003), 이옥(2002)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 및 제안이나 질문지 등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자녀양육지원제도, 보육 평가의 초점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아를 둔 부모와 유아를 둔 부모가 각기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자녀양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①매우 긴급', '②다소 긴급한 편', '③별로 긴급하지 않음' 중의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보육서비스 평가의 각 내용에 대해 '①특히 중요', '②중요한 편', '③약간 중요', '④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의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더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보육서비스 평가에 대해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응답은 3-4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자녀양육과 관련해 부모의 책임 의식이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의 실정, 고비용 보육시설의 이용의사, 자녀양육의 적절한 담당자 등을 묻는 문항으로 6문항이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1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백분율, 중위수, 최빈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취업모의 기대와 요구

자녀양육지원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취업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녀양육의 책임의식을 조사하였다. 근로하는 부모의 취학전 자녀의 1차적 양육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취업모들 중 73.2%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음 순위의 의견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견으로 취업모의 16.2%가 응답하였다(표 2). 이어서 취학전 영유아에 대한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양육책임에 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 중 68.4%가 '전적으로 동의'하였고 29.7%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였다. 응답자 중 98%의 대다수는 육아에 대해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책임을 나누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취업모의 취학전 자녀양육에서 1차적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있음을 수용(표2)하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근로하는 부모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1차적 양육책임

| 응답 | 빈도(%) ¹⁾ |
|---------|---------------------|
| 어머니 | 17(6.0) |
| 아버지 | 6(2.1) |
| 부모 함께 | 208(73.2) |
| 직장, 사업주 | 7(2.5) |
| 사회, 국가 | 46(16.2) |
| 계 | 284(100.0) |

1)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함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달리 실제 자녀양육에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양육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다(표3). 그 결과 영아를 보육하는 경우라면 아이의 어머니 본인이 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도 직접 양육하기를 추천하는 취업모가 가장 많았고(42.3%) 그 다음으로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등 가까운 친척을 추천하는 취업모가 많았다(39.0%). 반면 유아보육 추천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전문보육기관(37.4%)이었고 그 다음이 유아교육기관(20.6%)으로 나타나 영아의 경우와 달리 유아의 보육은 전문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한 보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모의 대다수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 외부기관이나 시설, 타인보다는 영아의 어머니나 가까운 친척을 보육자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결과는 가정외의 영아보육시설의 공급이나 영아보육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불만족 때문인지 아니면 영아의 보육은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의 보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 영유아를 위한 적합한 보육자에 대한 견해

| 구분 | 대상 | 영아의 경우 | 유아의 경우 |
|------------|------------|----------|------------|
| | | 빈도(%) | 빈도(%) |
| 아이의 어머니 본인 | 102(42.3) | 14(5.9) | |
| 가까운 친척 | 94(39.0) | 34(14.3) | |
| 전문보육기관 | 17(7.1) | 89(37.4) | |
| 유아교육기관 | | | 49(20.6) |
| 친척이 아닌 개인 | 2(.8) | | 5(2.1) |
| 그 외 | 26(10.8) | | 47(19.7) |
| 계 | 241(100.0) | | 238(100.0) |

이어서 취업모가 사회와 국가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영아와 유아를 둔 취업모를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표4). 평균 값에 의할 때 영아를 둔 취업모가 원하는 우선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고 다음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영아를 둔 취업모는 주로 보육시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더불어 직장에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아를 둔 취업모가 원하는 우선적 정책이나 제도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었다. 영아를 둔 취업모나 유아를 둔 취업모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육지원제도를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사회와 국가에 기대하는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가 자녀의 연령수준에 따라 다른가를 비교한 결과(표4),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기($t_{182}=-4.43$, $p<.00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부모의 자녀양

육 수행을 돋기($t_{182}=-4.33$, $p<.001$)', '직장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 부모가 어린 영아를 직접 양육하게 돋기($t_{184}=-4.54$, $p<.001$)',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t_{183}=-2.56$, $p<.05$)' 등의 항목에서 요구가 더 높았다.

영유아를 둔 취업모는 공통적으로 가족 및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영유아의 질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보다 육아를 지원하는 근로여건과 이미 마련된 제도의 실현, 그리고 고용 환경의 변화를 더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서비스 평가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보육서비스 평가에 대한 의견은 취업모가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을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보육시설 이용실정을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지 근처에 부모와 자녀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만족스럽게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5%였다. 그 외에 영유아보육을 위해 '다소 미흡하지만 이용할만한 시설이 있다'(39.1%), '만족스러운 시설이 있으나 이용기회가 없다'(12.0%), '매우 미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7.4%)와 같이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만족하는 취업모는 약 42%이고 그 외 약 58%의 취업모는 이용기회나 보육시설의

<표 4> 사회와 국가에 요구하는 자녀양육지원제도 및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

| 자녀양육지원제도 | 자녀의 연령 | | | 영아 | | | 유아 | | | t |
|---|--------|------|------|-----|------|------|----|--|--|----------|
| | N | M | S.D. | N | M | S.D. | | | | |
| 1.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기 | 183 | 1.37 | .56 | 183 | 1.52 | .63 | | | | -4.43*** |
| 2.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수행을 돋기 | 183 | 1.28 | .47 | 183 | 1.40 | .55 | | | | -4.33*** |
| 3. 직장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여 부모가 어린 영아를 직접 양육하게 돋기 | 185 | 1.42 | .61 | 185 | 1.57 | .66 | | | | -4.54*** |
| 4. 직장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조치하기 | 185 | 1.43 | .57 | 188 | 1.48 | .58 | | | | -1.45 |
| 5.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 184 | 1.44 | .58 | 184 | 1.50 | .58 | | | | -2.56* |
| 6.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 184 | 1.27 | .47 | 184 | 1.30 | .50 | | | | -1.74 |
| 8.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기 | 188 | 1.25 | .46 | 188 | 1.29 | .49 | | | | -1.71 |
| 9.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보육료를 달리하는 차등보육료 제도를 시행하기 | 188 | 1.79 | .73 | 188 | 1.82 | .71 | | | | -1.35 |
| 10. 취업부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육관련 제도나 법률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제정하기 | 187 | 1.59 | .69 | 187 | 1.59 | .69 | | | | .00 |
| 11. 자녀양육의 부모공동 책임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인식개선운동을 확대하기 | 187 | 1.51 | .63 | 187 | 1.52 | .63 | | | | -.71 |

* $p<.05$, *** $p<.001$

질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시설 이용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보육료보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되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있다면 선택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표5) '가능한 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약 44%), '반드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약 19%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사대상 취업모 중 약 63%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질적 보육을 선택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시급히 기대하고 있지만 부모의 부담에 의지해서라도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응답 결과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취업모의 소득 수준(가계 월평균소득 평균=570만 원, 표준편차=799; 본인 월소득 평균=242만원, 표준편차= 381만 원, n=253)을 전제하고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조사대상 중 약 31%의 취업모는 양질의 보육이라 할지라도 비용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표 5> 질적 보육에 따른 고비용 지불 의사

| 응답 | 빈도(%) |
|---------------------------|------------|
| 꼭 선택 | 48(18.0) |
| 가능한 한 선택 | 120(45.1) |
| 현재 보육료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에 따라 다름 | 82(30.8) |
| 선택하지 않음 | 16(6.0) |
| 계 | 266(100.0) |

보육시설 이용실정과 질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기초로 취업모는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러한 중요도에 대한 의견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표6).

<표 6>의 평균값에 의하면, 2세 이전의 영아를 둔 취업모는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영유아를 위한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어서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및 건강지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학력, 경력, 품성, 교육 및 학급운영 기술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부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와 기여'는 가장 후순위로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인지 및 언어 교육'도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유아를 둔 취업모는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영아를 둔 취업모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위한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및 건강지도'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학력, 경력, 품성, 교육 및 학급운영 기술 등)'을 중시하였다. 그에 이어 '영유아를 위한 인성 및 사회정서 교육(인성, 기본생활습관, 예절,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영아를 둔 취업모나 유아를 둔 취업모는 모두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영유아를 위한 안전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어서 영유아를 위한 영양 및 건강,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을 달리 생각하는가를 비교한 결과(표6) 유아를 둔 취업모는 영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영유아를 위한 인지 및 언어 교육(사고력, 창의력, 언어 등)($t_{184}=4.19$, $p<.001$), '영유아를 위한 인성 및 사회정서 교육(인성, 기본생활습관, 예절, 도덕성 등)

<표 6> 취업모가 요구하는 자녀연령에 따른 보육서비스 평가의 초점의 차이

| 보육서비스 평가의 초점 | 자녀의 연령 | | | 영아 | | | 유아 | | | t |
|---|----------|-----|------|------|-----|------|------|--|--|---------|
| | 평균과 표준편차 | N | M | S. D | N | M | S. D | | | |
| 보육시설의 입지와 환경 | | 189 | 1.39 | .55 | 189 | 1.41 | .55 | | | -.69 |
| 영유아를 위한 인지 및 언어 교육(사고력, 창의력, 언어 등) | | 185 | 1.76 | .75 | 185 | 1.62 | .66 | | | 4.19*** |
| 영유아를 위한 인성 및 사회정서 교육(인성, 기본생활습관, 예절, 도덕성 등) | | 189 | 1.41 | .61 | 189 | 1.31 | .48 | | | 3.16** |
| 시설장의 전문성과 자질(시설운영 철학, 학력, 경력, 품성 등) | | 189 | 1.49 | .60 | 189 | 1.43 | .57 | | | 2.48* |
|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학력, 경력, 품성, 교육 및 학급운영 기술 등) | | 188 | 1.33 | .52 | 188 | 1.30 | .52 | | | 1.15 |
| 영유아를 위한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 | | 189 | 1.24 | .44 | 189 | 1.28 | .46 | | | -2.02* |
|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및 건강지도 | | 188 | 1.26 | .46 | 188 | 1.29 | .45 | | | -1.15 |
| 영유아에게 적합한 시설설비, 다양한 교재교구 | | 183 | 1.58 | .63 | 183 | 1.51 | .58 | | | 2.16* |
| 부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와 기여 (부모참여기회,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 | 189 | 1.96 | .73 | 189 | 1.89 | .73 | | | 2.64** |
| 가정의 경제여건이나 부모의 직업 특성에 부응하는 시설 운영의 융통성 (예, 보육시간) | | 187 | 1.75 | .74 | 187 | 1.74 | .75 | | | .83 |

* p<.05, ** p<.01, *** p<.001

($t_{188}=3.16$, $p<.01$)', '시설장의 전문성과 자질(시설운영 철학, 학력, 경력, 품성 등)($t_{188}=2.48$, $p<.05$)', '영유아에게 적합한 시설 설비, 다양한 교재교구($t_{188}=2.16$, $p<.05$)', '부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와 기여(부모참여 기회,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t_{188}=2.64$, $p<.01$)'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영유아를 위한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영아를 둔 취업모($t_{188}=-2.02$, $p<.05$)가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영아를 둔 취업모는 상대적으로 유아를 둔 취업모보다 안전과 보호에 더 초점을 두며 유아를 둔 취업모는 교육 내용이나 보육 여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58.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28.6%)는 응답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보육시설의 평가와 인증이라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63%의 취업모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5%의 취업모는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인증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55.3%를 차지했고 참고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나타났다. 취업모들은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실행된다면 실제로 시설 선택시 의미있게 고려할 것임을 보여준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의 목적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취업모가 보육여건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목적(81.6%)을 제기한 반면 부적격 시설과 인력을 가려내는 목적(11.7%)이나 시설선택의 정보제공(6.0%) 목적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지적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준 도달 여부나 시설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66.5%)'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의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취업모(98.5%)가 부모를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보육교사(79.3%) 및 학계전문가(74.1%)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설장(39.5%)이나 지역사회대표(27.1%)가 평가주체로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나 보육교사, 학계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았다.

<표 7>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

N=266

| 항목 | 구분 | 빈도(%) |
|----------------------|-------------------------------------|-----------|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인지정도 |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9(3.4) |
| | 대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 | 26(9.8) |
| |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 76(28.6) |
| | 들어본 적이 없다 | 155(58.3) |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 매우 필요하다 | 167(62.8) |
| | 다소 필요하다 | 93(35.0) |
| | 별로 필요 없다 | 6(2.3) |
| 시설선택시 인증여부 고려 |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 147(55.3) |
| | 참고할 것이다 | 113(42.5) |
| | 별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 6(2.3) |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목적 | 보육교사, 보육프로그램, 보육환경의 향상 | 217(81.6) |
| |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사자격 등이 미비한 시설을 가려냄 | 31(11.7) |
| | 학부모에게 알려 보육시설 선택의 정보 제공 | 16(6.0) |
| | 보육시설과 감독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2(0.8) |
| 평가인증후 결과 공개 | 평가 항목별로 기준에 부합한 내용만 공개 | 44(16.5) |
| | 전체 기준에 도달되는 시설만 공개 | 33(12.4) |
| | 기준 도달 여부나 시설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 | 177(66.5) |
| | 각 시설이 자율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 | 12(4.5) |
| | 부모 | 262(98.5) |
| 평가의 주체 ²⁾ | 학계전문가 | 197(74.1) |
| | 관계공무원 | 133(50.2) |
| | 보육교사 | 211(79.3) |
| | 시설장 | 105(39.5) |
| | 지역사회대표 | 72(27.1) |

2) 제시된 빈도와 백분율은 해당자를 평가 주체로 포함해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의 빈도와 백분율이다.

대다수의 취업모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시설의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보육서비스의 평가에 대한 부모의 참여 욕구나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취업모들은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나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논의

취업한 어머니에게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일, 특히 자녀양육과 자신의 직업을 양립시키는 일은 취업모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 연구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나누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 더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과 기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들은 취학전 자녀의 일차적 양육책임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사회공동체와 국가가 취학전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별 가족이 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취약해진 현대의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사적이고 개별적 요인으로 또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취약해진 가족이 많지만 사회적 지지체계는 불충분한 탓에 가정에서 이탈되는 아동의 수가 점증하는 실정이다. 한 예로 2003년에 발생한 약 1만여 명의 요보호 아동 중 약 44%는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실직으로 버려진 아동이었으며 약 43%는 미혼모의 아동이었다(중앙일보, 2004.3.21). 사회와 국가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아동이 제대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개별 가족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업모들은 영유아의 적합한 보육자에 대한 견해가 영아와 유아에 따라 달랐다. 영아를 위해서는 가정외 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보육보다 어머니나 가까운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더 바람직하게 여겼고 유아를 위해서는 전문 보육기관을 통한 보육을 더 선호하였다. 실제 시설을 통한 영아 보육율은 11.2%(여성부, 2005)로 낮다. 영아의 경우 시설에서의 집단보육보다 어머니나 친인척이 보육할 때 일대일의 상호작용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영아에게 더 적합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는 보육시설에서의 영아보육이 시설 여건이나 서비스의 측면에서 영아를 둔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때 문일 수 있다. 따라서 영아의 발달수준과 개인차에 부응하는 다

양하고 질적인 영아보육시설 및 영아보육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시설보육을 원하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만족스럽게 보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업모들은 자녀양육지원제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사회와 국가가 가족 및 보육시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질적 양육환경을 마련해주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전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보육 시설에 대한 주된 요구 사항이 보육기관의 제반 시설의 질적 향상(33.1%)과 보육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확대(32.7%)였던 연구결과(경기개발연구원, 2003)와 일관된다.

한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요구가 다소 다르다. 가족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영아의 경우는 가정외 시설이나 기관보다는 가정내외 인적 자원을 활용해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용환경 면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며 유아의 경우는 가정외 전문보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이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직장 환경 및 제도 실현과 고용환경의 변화를 더 긴급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휴가급여 수급자(n=1530)들이 기대하는 우선적 보육정책이 '보육시설 확충'(45.4%), '보육비 지원'(33.6%), '육아휴직 기간 연장'(11.2%)이라고 했던 조사결과(노동부, 2005)와 일관된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모가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로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실제 2003년 9월까지 출산할 것으로 추계한 여성임금근로자 수(4만 7천여 명)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은 열 명에 한 명(10.3%)만이 이용(한국여성개발원, 중앙일보, 2003. 11.04 기사)하였다. 결국 영아를 둔 취업모는 자녀양육과 일의 지속 문제로 더 큰 갈등을 겪는 것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직장 환경 및 제도 실현과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영아보육의 담당자로 어머니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을 선호(표5)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아를 둔 취업모는 영아를 위해 어머니나 할머니가 더 적합한 양육자라고 여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질적 보육 환경을 확보하고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질적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가정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유아를 둔 취업모는 모두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영유아를 위한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어서 '영유아를 위한 급식과 간식 및 건강지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영아를 둔 취업모는 유아를 둔 취업모에 비해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반면 유아를 둔 취

업모는 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보육인력,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전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이 보육시설의 선택기준으로 건강, 영양, 위생 관리를 가장 높게 지적하고(이상화, 2002) 취업모들이 보호와 교육을 병행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선호하였던(임후남, 2003) 연구결과와 일부분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실제 취업모들의 절반 가까이는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는 현재 보육시설의 보육료보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가능한 한 선택하고자 한다. 그만큼 질적 보육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가 높다는 것이며 양질의 보육의 기본적 요건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 영양과 건강, 전문성을 갖춘 보육인력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비용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아동은 누구나 질적 보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제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은 매우 저조하다. 취업모들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부모들이 반드시 주체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데 실제 시행되는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육시설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더욱 시설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권도희, 2002) 보육수요자인 취업모들은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육수요자인 부모가 시설평가에 대해 인지할 때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협력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가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바를 제도와 실제 서비스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 보육서비스 평가에서 초점을 두는 내용 등을 폐쇄형 질문 항목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취업모의 의견을 조사하였기에 취업모들은 대부분의 내용이 매우 필요하다고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시된 항목들이 모두 현시점에서 중요하기는 하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나 질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의 한계로 그러한 차이가 명확히 되지 못했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실제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보육 내용에 대한 요구와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만으로 제한되어 보육서비스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전국의 약 2만7천여 보육시설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 1만 2천여 개소가 있고 1천 3백여 국공립 시설 중 약 8백 개소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만큼(여성부 보육기획과, 2004) 서울 경기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보육시설의 수가 많아 보육서비스 이용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취업모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취업모와 그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국가가 우선 가족과 시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우선 초점을 두어야 하며 더불어 사업장에서의 자녀양육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양육지원제도와 정책이 영아를 둔 가정과 유아를 둔 가정에 따라 달리 전개되어야 함을 보여주었고 보육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모의 참여 요구가 높은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취업모가 보육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소 다르므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의 전개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접 수 일 : 2005년 09월 15일
- 심 사 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1월 16일

【참 고 문 헌】

- 경기개발연구원(2003). 경기지역 기혼여성 취업에 관한 연구.
R2003-3 경제사회연구부.
- 권도희(2002).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시설평가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청 구논문.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면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91-104.
- 김향란(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전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동부(2005). 보도자료. <일하는 엄마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노동부 영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2005. 5.
- 민혜윤(2003). 기혼 취업여성의 보육실태와 직장보육시설 요구도 조사-수도권내 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4).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 정책 -여성복지정책 인식, 요구도,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2), 195-212.
- 박윤미(2002).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지원, 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 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09.
- 여성부 보육기획과(2004).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2004. 12.
- 31 현재
- 여성부(2005). 보육실태 조사. 2004. 4.
- 이경채(200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

- 의 인식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상화(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보육욕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옥(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임후남(2003). 취업모자녀의 보육시설에 관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중앙일보(2003.11.04). 보호 못 받는 모성보호법 - 육아휴직 열 명 중 한 명뿐.
- 한국여성개발원(2004). 2004 여성통계연보. 2004 연구보고서 130-4. 한국여성개발원.
- Hunt, J. G. & Hunt, L. L.(1982). The dualities of careers and families: New integrations or new polarizations?. *Social Problems*, 29(5), 499-510.
- Katz, L.(1993). Multiple perspectives on quality in early childhood programs. ERIC Diges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355041.